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68 발의연월일: 2022. 1. 9.

발 의 자:양정숙·윤두현·강민정

윤준병 • 이용빈 • 황운하

이상헌 · 김홍걸 · 강은미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면서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 무료 열람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 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 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 함(안 제19조제1항).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를 6)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개 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	제19조(<mark>설명의무</mark>) ①
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	
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	
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	
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1
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대출성 상품	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u>5)</u> (생 략)	<u>6)</u> (현행 5)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 람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4. (생략)

② ~ ④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